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167호

제출년월일 2023. 3. 6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3월 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사항(위원) 일부 변경(안 제3조)
- 나.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사항(간사) 변경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(위원, 간사)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